

# 제품안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Q** 섬유유연제의 종류를 표준형과 농축형으로 구분된다면 별도의 구분 기준이나 검사항목이 있나요?

**A** 섬유유연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 대상공산품인 생활화학가정용품(제8부섬유유연제)에 해당됩니다. 섬유유연제의 종류는 자율안전확인 부속서7에서 표준형과 농축형으로 구분하며, 종류를 분류하는 기준과 이에 따른 시험방법의 구분은 없습니다.

**Q** 건축에 들어가는 접착제로 석고보드 사이에 접착제를 도포하여 2장의 석고보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할 때 쓰이는 제품은 인증대상인가요?

**A** 접착제가 일반가정 및 학교에서 고무, 목재, 플라스틱, 피혁, 섬유, 금속, 도자기, 유리 등의 물체의 표면을 접착시키는 용도로 사용되는 유기계 접착제에 해당된다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인 생활화학가정용품(제3부 접착제)에 해당됩니다. 그런 접착제가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용도가 아닌 건축자재인 석고보드와 석고보드를 접착하는데 사용되는 용도라면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인 생활화학가정용품에 해당되지 않으나, 환경에서 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유아용품인 아기띠 전체가 원단으로만 제작되고 다른 부속품은 일절없는 디자인도 KC 받아야 하나요?

**A** 해당제품이 엮는다든지, 안는다든지 하기 위해 일어서고 걸을 때 손으로 자유조정을 허용하는 성인 상체에 부착되는 제품은 “유아용캐리어”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에 해당이 됩니다.



**Q** 섬유제품(의류)에 박음질로 부착된 꼬리표에 영어로 표기가 되어있는 제품에 품질표시 라벨(한글)을 붙여야 하나요?

**A** 의류제품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정용 섬유제품(36개월 이하의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인 유아용 섬유)에 해당됩니다. 섬유제품에 박음질 라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파운데이션류, 런닝셔츠, 펜티류, 양말류, 장갑류, 수영복, 체조복, 스카프, 머플러, 가발류, 모자, 기저귀류, 운동화, 수의류, 타올, 넥타이, 모기장, 덮개류, 턱받이류”는 꼬리표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표시문자도 안전품질 표시 사항은 한글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제조자명, 모델명 등 한글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영문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Q** 당사는 정격 10A 이상의 여러 가지 모델의 퓨즈를 전기용품(PA앰프, 산업용 오디오제품)의 부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안전인증품은 10A 이하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10A 이상의 퓨즈는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부품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A**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품목인 소형 퓨즈의 인증범위는 정격전류 20mA 이상 10A 이하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정격전류 10A를 초과하는 퓨즈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도 제조·판매가 가능합니다.

**Q** 대전력 및 정격전류 80A 이상의 산업, 설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AC순차 전원장치입니다. 정격전류는 80A(채널당 10A)이며 채널당 출력은 2,200W로서 8개의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동 AC순차 전원장치가 안전인증 대상인가요?

**A** 입력 전압을 받아 동일전압을 출력 측 여러 단자에 순차적으로 통전하게 하는 AC순차 전원장치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품안전 관련 답변사항을 정리하여 게재한 것으로 협회 의견과 다를 수 있으며, 각종 증빙내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